

2016 과산 의정소식

<http://council.goesan.go.kr>



“생산적인 의정,
연구노력하는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greeting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괴산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속에 출범한지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개원 이래 “군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의회, 지역발전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바른의회,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한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진 알찬 의정활동의 이모저모를 담아 2016 괴산의정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괴산군의회 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괴산군의회에 바라고 싶은 의견이나 고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군민 여러분과 괴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박연성**





CONTENTS

- 2015년 의정성과 | 04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 06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19
- 행정사무감사 | 26
- 특별위원회 활동 | 29
- 의원발의 조례안 | 32
-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33

2015년 의정성과

■ 내실 있는 회기 운영

- 회기운영 : 9회 78일(정례회 2/38, 임시회 7/40)
- 업무보고청취(2회), 군정질문(1회/37건), 행정사무감사(1회/62건), 결산승인(1회), 예산안 심사(4회)
- 안건처리 : 108건(의원발의 33, 괴산군수 제출 75)
- 의원정례간담회 : 22회 111건

■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2015.4.24 ~ 4.28/2015.10.16~10.21): 113개소
- 환경보전특위(2015.6.29.~7.1): 41개

■ 결의문 · 성명서 발표

-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5. 3. 16)
-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 성명서” (2015. 3. 27)
-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2015. 4. 20)
-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 (2015. 7. 2)

■ 의원연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구례자연드림파크(원주,구례, 2015. 4. 9)
- 원주새벽시장, 제천시 자원순환센터(원주,제천, 2015.9. 8)
- 중부4군의회 합동연찬회(음성, 2015. 11. 13)
- 의정실무 연찬회(제주, 2015. 11. 16 ~ 11. 18)

회기운영 현황(2015. 1. 1 ~ 2015. 12. 31)

- 개회횟수 : 연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 회의일수 : 연 78일(정례회 38일, 임시회 40일)

회 기 별	개 회 일	폐 회 일	회 기 일 수
제232회 임시회	2015. 1. 21.	2015. 1. 27.	7일
제233회 임시회	2015. 3. 24.	2015. 3. 30.	7일
제234회 임시회	2015. 4. 23.	2015. 4. 30.	8일
제235회 임시회	2015. 5. 21.	2015. 5. 22.	2일
제236회 1차 정례회	2015. 6. 25.	2015. 7. 3.	9일
제237회 임시회	2015. 7. 21.	2015. 7. 29.	9일
제238회 임시회	2015. 9. 14.	2015. 9. 17.	4일
제239회 정례회	2015. 10. 15.	2015. 10. 22.	8일
제240회 2차 정례회	2015. 11. 23.	2015. 12. 22.	29일

안건처리 현황(제232회 ~ 제240회)

구 분	발의 · 제출			가 결			부결 (계류)	의안 철회
	계	의 원	군 수	원 안	수 정	채 택		
계	108	33	75	103	5			
조 례 · 규 칙	소 계	73	18	55	72	1		
	제 정	41	5	36	40	1		
	개 정	28	13	15	28			
	폐 지	4		4	4			
기 타	소 계	35	15	20	31	4		
	예산안	7		7	4	3		
	승인안	1		1	1			
	동의안	3		3	2	1		
	건결)의안		2		2			
	기 타	22	13	9	22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제232회 임시회(2015. 1. 21~1. 27 / 7일간)

◆ 괴산군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안

- 금연지도원 제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지급기준 등을 규정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가 ‘1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관련법령 이관 및 조문 이동 내용을 반영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방식 변경, 부단장 선출방식 및 임무조항 신설, 단원의 해임내용 등을 보완하여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233회 임시회(2015. 3. 24 ~ 3. 30 / 7일간)

◆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괴산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요건이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주택마련 등 개인적 사유로 혼인신고를 예식일보다 미리 할 경우, 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준일을 조정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괴산군 지역경제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

◆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급금액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청천면버섯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추정가	비고
토 지	청천면 청천리 14번지외 20필	대지	21,964	3,249,214	

◆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한자어로 표기된 법률을 한글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칙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한자어로 표기된 법률을 한글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칙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건의안**

- 한민족의구성원인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더 이상방치하지 말고 인도주의와인권 향상을위해대한민국국회와정부가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함

◆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농촌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기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함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위탁하기 위함

제234회 임시회(2015. 4. 23~4. 30 / 8일간)

◆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 청라실버타운 부지 취득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취득면적	면적	재산가액	비고
토 지	괴산읍서부리 801-3외 10필지	128,345	21,964	6,000,000	매입

◆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단서 조항 신설,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 조항 추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 과오납금 반환기산금 이자율 신설 등

◆ 괴산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환경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괴산군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괴산군민회관의 명칭변경과 더불어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35회 임시회(2015. 5. 21~5. 22 / 2일간)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제정 당시 누락된 근거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누락된 보조기관 중 “소장급”을 추가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제정 근거법령의 조문을 추가 인용하고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려운 법률용어(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 괴산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CCTV관제센터 신설운영에 따른 통신관제팀 신설 및 인력 증원 요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수준의 복지 인력 확충 시행지침 시달
- 괴산군 공무원 정원 조정: 604명 → 614명(10명 증)

◆ **괴산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괴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괴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시설 사용자가 취소 시 사용자의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 조항을 개정
- 제1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를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본문개정

제236회 제1차 정례회(2015. 6. 25~7. 3/9일간)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 농어촌버스타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괴산한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예정가액	비고
토 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959-9	농축산물 직매장 및 시식장 1동/600m ²	1,140,000	

- 괴산농업역사박물관 내 국유재산 취득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면적	예정가액	비고
토 지	괴산읍 검승리 770-8외2필지	1,102	90,000	

◆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정 중기계획인 군관리계획을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제시하고자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하기 위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 계	364,313,756	49,000	49,000	364,313,756
일반회계	331,621,946	49,000	49,000	331,621,946
특별회계	32,691,810			32,691,810

◆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결산액: 475,670백만원
 - 세출결산액: 393,601백만원
 - 세계잉여금: 124,068백만원

◆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예비비 지출액: 54,440,630원

제237회 임시회(2015. 7. 21~7. 24 / 4일간)

◆ 과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감물면 이담리 대상동 반 분리(4반→6반), 칠성면 쌍곡리 내쌍 반 분리(3반→4반)

◆ 과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됨에 따라 지형 변동이 발생하여 선형과 행정구역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함, 과산읍 사창리 15필지를 능촌리에 편입

◆ 과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1년 이후 주민세액 6,000원을 적용하여 14년간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의 상향 권고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세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
-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6,000원⇒10,000원]

◆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소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내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면적	비고
토 지	소수면 아성리 158-3외 12필지	6,139	기부채납

◆ 같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 같은권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행정재산(권역활성화센터, 갈론산촌체험관, 소매점, 선박 등)에 대한 위탁운영시 재허가 기간 3년 연장과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 재 허가기간을 3년에서 1년 연장으로 수정가결

◆ **괴산~괴산C간 도로연결공사 사업추진 예산편성계획 동의안**

-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19번 국도구간인 괴산~ 괴산C간 도로 연결공사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고, 괴산대체산업단지 및 발효식품농공 단지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238회 임시회(2015. 9. 14~9. 17/4일간)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일부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 **괴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12. 30. 개정되어 '15. 7. 1.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괴산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장수수당은 유사제도로 중복지원 시 국비 지원금이 감액 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유시수당실태조사 관련 공문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폐지·축소권고에 의한 조례 폐지

◆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대상 조례를 없애고, 신청자격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생산농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 및 개발행위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 **괴산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서 규정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조례를 정비

◆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위원회 위촉시 청렴서약서 및 타 위원회 중복위촉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함
-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 만큼 적용을 완화함

◆ **괴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폐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주민부담을 완화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

◆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괴산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 반영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괴산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촉진하고자, 「괴산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정비

◆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 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 관리행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으로 개정하고자 함

◆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획포상금과 지급기간을 확대 변경하여 원활한 구제활동을 추진하고, 피해보상 제외규정 일부를 삭제하여 농업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제11조 제4항 제2호 본문 중 “3만원” → “5만원”으로 개정

◆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음식물류 발생억제 및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지도 점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

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조례 에 의한 수수료 산정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건립에따른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제239회 임시회(2015. 10. 15~10. 22 / 8일간)

◆ **괴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따라 이와 관련된 규칙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개선 · 보완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에 대응하여 공연장 등록 등에 관한 법령 미근거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따른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변경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노인, 여성, 장애인, 자활사업과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각 기금별 특성을 명시하고, 매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이미 설치 운용 중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에서 '공동주택' 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2항)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허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4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로 대상 허용범위 확대(안 제4조제3호)

◆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보조금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문 및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제 · 개정 미반영사항을 반영

◆ **괴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3만원 부터 3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규정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아니한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등 일반 유형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례를 폐지

◆ **괴산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제240회 정례회(2015 11. 23~12. 19/29일간)

◆ **괴산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

◆ **괴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 · 도로 이관되어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안**

-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교통 사고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군세 기본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송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

◆ **괴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군세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송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

◆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행복공원 조성사업〉

구 분	소재지	취득면적	비고
사업명	근린공원 조성사업	주민행복 공원조성사업	
사업량	11, 117m ²	1, 650m ²	
시설구분	근린공원	문화공원	
취득대상(토지)	6, 732m ²	1, 541m ² (매입완료)	△5, 191m ²
사업비	9, 000백만원	2, 400백만원	

〈버섯랜드 조성사업 취득계획 변경〉

구 분	소재지	면적	비고
매입필지	21필지	△4필지	21, 964 1필지추가 5필지감소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골가공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 사업명 : 꿀벌랜드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7 (3년)
- 위치 :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보광초 구 화곡분교)
- 총사업비 : 4, 005백만원 (국비 2, 804 지방비 1, 201)
- 괴산군 2, 586백만원 (국비 1, 811 지방비 775)/ 부지 매입비(1, 781백만원) 별도

- 공유지 확대 및 집단화 임야매입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대장가액(천원)			
3필지		7, 271	26, 577	79, 734		
문광면 송평리 산 26-9	임야	4, 177	6, 683	20, 050	(주)칠성산업	
문광면 송평리 산 27-7	〃	2, 627	16, 891	50, 675	(주)괴산레미콘	
문광면 송평리 산 27-18	〃	467	3, 003	9, 009	〃	

◆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 괴산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거복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합리화 및 관리의 위탁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규모	376,962,020			376,962,020
일반회계	345,005,927	0	0	345,005,927
특별회계	31,956,093	0	0	31,956,093

◆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예산안	심의내역		심의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규모	310,627,166	678,538	678,538	310,627,166
일반회계	283,247,722	678,538	678,538	283,247,722
특별회계	27,379,444	0	0	27,379,444

◆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m, 천원)

기 금 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합계	9,249,156	1,347,609	7,901,547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41,320	9,700	431,620	-
청소년복지기금	500,632	3,500	497,132	-
사회복지기금	4,845,252	88,927	4,756,325	-
재난관리기금	1,368,565	631,000	737,565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61,273	8,482	352,791	-
식품진흥기금	213,359	6,000	207,359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18,755	600,000	918,755	-

◆ **괴산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괴산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괴산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결과의 공개, 진행 상황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함

◆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장의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장협의회 참석수당 지원 추가

◆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분화로, 수강료 감면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괴산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근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신설

◆ **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괴산군 조례 중 별표에 해당하는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변경

◆ **괴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 상속에 관한 조례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11.28.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보건 기관 등의 유상 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

◆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 도시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괴산군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괴산군이 출자한 출자법인 (괴산 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괴산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괴산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 함

◆ **괴산군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괴산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군민모두에게 바람직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 약취 저감 대책과 축사 출입구 자동 소독기 지원 현황 및 대책은?

| 신승규 의원



A

● 괴산군은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유기농업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약취가 많이 저감되었으나, 집단사육지역(청안, 사리)에서 약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강한 가축사양 및 깨끗한 축사 이미지 제고 등 약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사 공원화사업(10개소), 개별퇴비화시설(6개소), 미생물제제(700톤), 수분조절제 지원사업(13,000톤)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약취 저감을 위하여 생균제(167톤), 돈분장환경 개선시설(10개소),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25기), 돈육품질향상(4개소)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지도를 통해 의식을 전환시키고,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축사약취 ZERO화를 위하여 가축 생균제, 축사환경개선제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약취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돈분장 환경 개선사업, 축사공원화 사업,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으로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여군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축사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시설기준 강화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발생의 사전차단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300㎡이상의 축사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축사 출입구 자동소독기 174개소에 6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농가가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농가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수리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소독기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5호)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축방역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관내 한해피해 대처를 위한 중·장기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2015년도 집행 사례 중심의 한해피해 관련 주요사업 내용은?

| 김영배 의원



A

- 금년은 6월1일 기준 강우량 164.2mm로 평년대비 56%이고 가뭄과 더불어 이상 기후와 무더위가 극심한 한해였습니다. 수도작은 대부분 수리안전담(98%)으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나 천수답 및 비닐멀칭이 되지 않은 일부 밭작물인 고추, 옥수수, 참깨 등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 5월에 양수 장비 사전점검, 양수기 사전구입 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였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양수기 71대/3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전 구입토록 조치하였으며, 긴급예비비 360백만원을(도비180, 군비180) 긴급 편성하여 하상굴착, 용수로 보수, 중소형 관정 135공 굴착등 신속한 대응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 습니다.

-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저수지 79개소, 대형 암반관정 132개소, 양수장 37개소, 취입보 193개소를 통해 농업 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읍·면에서 보유한 양수장비와 양수장, 대형 암반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여 영농기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를 활용한 대형 암반관정 개발과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등 대규모 국비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괴산읍 장날 혼잡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 해결과 노점상 정리 방안, 그리고 괴산읍 시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은?

| 장용덕 의원



A

- 장날은 차량이용이 평일보다 많아 의원님의 말씀처럼 차량통행이 더욱 더 혼잡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단속보다는 주차공급 정책과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신협 앞 주차장, 노상주차장 정비하고 CCTV 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늘어나는 차량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불법 주정차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지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불법 주정차에는 관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주민의식제고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고객을 위한 내 상가앞 주차안하기 운동 등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정비, 하상주차장 활용 방안과 더불어 경제과와 협의하여 공공근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정차 지도 및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괴산읍 장날 주차난 해소 대책 중 괴산농협 농산물 집하장 출입문(정문) 앞의 노점상(10여명)으로 인해 농산물 적재능가 차량의 진출·입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날은 전통시장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장날 도로변 물건 판매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판매를 금지 할 경우 현재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날에 한하여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일부구간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지역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께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 되도록 도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처분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전국 최고의 성불산 산림휴양단지로 운영키 위한 우리군의 차별화된 전략은?

| 윤남진 의원



A

-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단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숲속의 집 운영, 체험 그리고 즐길거리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손님 요구사항에 대하여 NO가 아닌 YES로 손님이 감명 받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자연속에서 쉴 수 있는 원두막 또는 데크를 조성하고, 그늘과 그늘이 이어지도록 숲속의 집 부근에 추가로 나무를 식재 하겠습니다. 또한 산막이옛길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묵고 쉬어 갈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둘째, 체험관 운영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체험관 운영예정으로 구상은 많이 하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 특산품인 고추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임객정 캐릭터 만들기 등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체험관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학습관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 목을 선정, 지역을 알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즐길거리 제공입니다. 우리나라 휴양림시설 중 우리군 휴양림 즐길거리가 최고라고 자부 합니다. 12지신과 미로, 분수대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숲속의 메가시티, 세계1종1속의 미션나무로 어우러진 미션향 테마파크, 한자리에서 돌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석 전시관, 그리고 연목, 나무, 꽃이 어우러진 생태숲, 이밖에도 성불산 등산, 도덕산 산책로 등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에는 거리공연, 난타공연, 색소폰 공연 등,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 할 추억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적극적인 자체수입 징수 대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상황은?

| 홍관표 의원



A

●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2015년 7월말 현재 지방세는 19,588백만원을 부과하여 86.8%인 16,99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516백만원을 부과하여, 81.2%인 8,54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334백만원이며, 연도별로는 현년도분이 1,193백만원, 지난년도분이 3,141백만원이고, 종류별로는 지방세가 2,395백만원, 세외수입이 1,939백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순서로 체납규모가 크며, 세외수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5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월에서 2월, 5월에서 6월 각각 2회씩 설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상시활동으로 7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42대(25백만원)를 영치하였고, 부동산 및 자동차 4,088건 1,156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타시군지방세 환급금, 각종보상금 등 82명에 대한 42백만원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 요구하였으며, 체납자 36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실·과·사업소에 요청하였고, 20명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체납자 5명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특별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상시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확행과, 장기계속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마을별 책임 징수제 실시, 실·과·소, 읍·면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관내 체납자 1,261명에 대하여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하고, 예금잔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각 실과의 부과·징수 과정의 오류 최소화,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선진화된 농업환경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계획과 지역농 특산물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농산물 포장재 제조 공장 건립 진행상황은?

| 장옥자 의원



A

- 먼저 선진화된 농업환경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센터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지원하여 62개 작목반(법인)에 4,650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8,954㎡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로 가격 폭락이 비일비재하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가공 시설 지원 및 유통 판로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노후시설 현대화, 개보수, 시설보완 등 수확 이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선진화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을 통한 융복합 6차산업 확산을 위해 농협 고춧가루 공장의 생산품목 다변화와 감자가공공장, 해썬절입배추공장, 인삼가공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농산물 포장재 제조 공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포장재 제공업체는 2개소로 연풍과 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업이 영세하여 청주, 경기 소재 포장재제조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특산물 포장을 고품격화하여 출하하는 포장재 마케팅으로 괴산군 이미지 제고 및 농가수치 가격 상승을 위해 관내 농산물 포장재 제조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시설규모 8,600㎡, 100억원을 투자하여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괴산군 소재 일원 또는 괴산고춧가루가공공장 활용 건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의 포장재 제조공장 건립 유치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질문사례 게재

Q

우리군의 지역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과 지역 아동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발전 방안은

| 김해영 의원



A

- 먼저, 문화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2014. 8~2015. 1월까지 1, 93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확보, 각종 문화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 추진과 괴산 문화원 및 한국예총 괴산지부 사무실, 강의실, 연습실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2015. 5~8월까지 51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괴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통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5. 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투융자심사 및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까지 괴산군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질문인 방과 후 아동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주민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방과 후 아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총 12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 전체이용 아동은 232명으로 센터별 23~30명정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5일 14:00~19:00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공휴일 돌봐줄 보호자가 없이 방임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장연아동센터 등 5개소를 지정하여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별 학습지도, 미술, 음악, 체육, 도시와 농촌어린이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창의미술교육, 바둑, 바이올린 등 13개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인적자원 활용 및 퇴직 교사의 교육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관내 아동들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인 2015. 11. 24~12. 29일간
실·과·사업소 및 소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운영행정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 괴산군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 요망

부서별 균형 잡힌 예산 배분

- 2016세출예산 분야의 균형 잡힌 예산배분과 관련 관광 및 환경 분야의 경우 청정괴산의 이미지제고와 괴산군 자체 브랜드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10%이상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모색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센터 활용 제고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지방세 체납자 납부 대안 강구

- 군민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관련 중복지원 방지

- 옥수수포장재와 농산물박스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남은 지원액을 다른 사업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성과 미흡

- 정부의 지원(3년)을 받는 자활지원대상자가 진정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대책 필요

각종 위원회 운영 부진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미흡

-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여가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요망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부진

-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검도, 배드민턴, 축구 등)를

통하여 괴산군의 대외 지명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종목 저조

-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체육대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괴산군이 참가하는 종목을 확대·추진할 것

1읍면 1행사 재정비 요망

- 현재 1읍면 1행사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낭비성·소모성만 보임. 1읍면 1행사를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화합과 애항심고취를 위하여 군민 전체를 위한 한마당 잔치를 계획 필요

괴산한지문화축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지역축제, 동문체육대회 등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한지문화축제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기획시를 타 지자체가 아닌 관내업체로 지정하고 운영이사(3명)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 됨

2016년도 희망가득 행복택시 운영 미비

- 행복택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성과가 미흡하므로 운행 시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읍·면간 운행을 병행 할 수 있는 다각적 대안미련 요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 부족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확대할 것

공중보건의사 관리 철저

- 민원인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점검부서(보건소)의 복무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

정신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신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산업개발위원회 |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잦음(3천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 각종 공사 설계시기획 및 전문기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하여 설계 실시요망

전통천연발효사업 관리 미흡

- 보조기관에 대한 관리필요성 및 인근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지역 유기농산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축사 출입구등 자동소독기 작동 실태조사 철저

- 과산관내 축산농가에 지급한 출입구 자동소독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난 자동소독기에 대한 수리·교체등 조치 요망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 미흡

- 가축매몰지 실태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액비저장조 등 관리 미흡

- 사용하지 않는 액비저장조 향후 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사용 액비저장조에 대한 공동자원화 시설 위탁운영 방안 강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하수 오염피해가 적은 담수어 쪽으로 어종 변경이 시급하고, 타지역 사업자가 사업 독점될 우려가 있어 하수 오염 피해가 적은 담수어 어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과산 지역주민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정비·단속 경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 미흡

- 향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요망

절임배추 농가에 발생하는 부산물 관리

- 절임배추 농가에서 발생하는 배추 부산물을 퇴비 및 사료로 자원화 요망

야생동물 사체 관리 철저

- 감염병·자연사·포획한 야생동물 매립장에 반입시 관리대장등을 만들어 야생동물 사체 관리에 철저(소독등)를 기하여야 할 것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 야생조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류기피제 지원등 보상대책 계획 수립 시행 요망

은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공사 지연

- 상하수 시공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계에 신중을 기하여 공사에 임할 것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금 지급 지연

-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보상금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을 구분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토록 할 것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점검 활동 미흡

-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점검 활동시 사전 마을책임자에게 통보 입회하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추진할 것

대학찰옥수수 종자 보급 계획 및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

- 토질에 맞는 대학찰옥수수 종자 보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학찰옥수수 및 절임배추 판매 실적 감소에 따라 옥수수 및 배추 후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물 육성 요망

관내기업체 지원

- 관내 기업체 지원이 타시군 보다 미약함으로 적극 노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어로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할 것

특별위원회활동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 활동기간(현지조사활동)

- 1차: 2015. 4. 24.~4. 28. 【60개소】
- 2차: 2015. 10. 16. ~ 10. 21.【5개소】

▶ 주요점검사항

- 대 상 : 2015년도 주요건설사업장(이월사업 포함)
- 방 법 : 현지확인 점검

▶ 조사대상및 방법

- 미착공 사업장 : 미착공사유 및 준비상황 분석(측량, 설계, 계약 등)
- 공사중인 사업장
 - 공사 진척상황,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 사업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 완료된 사업장
 -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사업장 주변 정리실태





조사결과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대책 미흡과 일부 사업장에서 농로 및 진입로 포장 사업의 경우 비탈면 토사유실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부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인근 농지와 높이를 맞추어 우기시 농지의 유실을 방지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배수관 사이의 꼼꼼한 마감처리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포장 및 홍배수관 설치등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적기에 시공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 일부 사업장의 경우 농기계 및 차량 운행시 안전시설 조치가 미흡하여 강우시 노면 유실 우려 및 공사 후 거푸집 철근 일부가 제거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모든 사업내 안전교육 일 1회 이상 실시 및 안전장비 착용하도록 공사 감독 철저히 할 것



수범사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 군정 역점사업으로써 우리군의 친환경 유기농을 모티브로 하는 발전 전략 컨셉과 조화로운 중부권 최대의 생태적 휴식공간으로써 모든 공정이 정상시공중인 모범적인 사업장이고, 또한 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과 휴식의 친자연적 명소로써 자연휴양림과 미션향 테마파크 2개사업 100%완료되었고, 생태공원을 비롯한 숲관광 메가 시티, 생태숲, 산림문화휴양관, 한옥체험관 5개사업 또한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등 괴산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산막이옛길의 체험관광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숙박을 겸한 힐링관광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임

곤동농로포장공사

⇒ 벤치플룸관(U자형관)위에 농지진입을 위한 주철뚜껑을 사용하였고, 설계 당시부터 농로와 배수로사이의 이격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농로의 효용성을 높이고, 인접농지에 배수로를 연결하여 우천 시 농경지의 유실 등이 예방되도록 세심한 시공이 이루어짐

연풍면괴정배수로공사

⇒ 당초 식생블록 공사구간이었던 잔여구간(약 175m)를 괴산대제 신단에서 발생한 발파석을 활용함으로써 약 5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음

조천3리농로포장공사

⇒ 종전의 교량을 이용하여 안전진단 후 난간 및 방호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 하였음

불정면 탐평농로포장공사

⇒ T자형 농로포장공사와 관련 농기계 운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농지쪽 절개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 **활동기간(현지조사활동)** 2015. 6. 29.~7. 1.

▶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오수·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배출농가
- 방법 : 현지확인 점검

▶ 점검사업장 및 업소

계	기업체	세차장	축산시설	오·폐수처리업소	기타
41	21	-	18	-	1

▶ 조사결과

- 사업장발생 비산먼지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인근 농지 및 하천에 피해 우려
- 일부 축사의 경우 폐사돈의처리 방법에 대하여 인식 부족
- 축산농가의 경우 전기시설 설치 및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 위험

▶ 개선의견

-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하여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한 비산먼지방지
- 폐사돈의처리 방법에 대하여 인식이 미흡하여 관련부서에 폐사돈의 처리방법홍보
- 견사와계사에서 악취 방지 대책 및 주변환경 정비 지도 점검
- 축산농가의 경우 전기시설 설치 및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에 지도가 필요함



수범사례

청천면 후평리 이동윤 축산

⇒ 돈분을 매일 퇴비화 및 퇴비사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악취 저감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함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자
1	2015.3.16.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관표, 장옥자
2	2015.3.18.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신송규, 장옥자
3	2015.3.18.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연섭, 김영배
4	2015.3.18	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연섭, 홍관표
5	2015.3.18	괴산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윤남진, 신송규
6	2015.3.18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용덕, 김영배
7	2015.3.18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관표, 김해영
8	2015.5.22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옥자, 박연섭
9	2015.5.22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신송규
10	2015.5.22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용덕, 김영배
11	2015.5.22	괴산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영, 홍관표
12	2015.5.22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남진, 장옥자
13	2015.5.22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남진, 장옥자
14	2015.5.22	괴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관표, 김해영
15	2015.5.22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홍관표, 김영배
16	2015.5.22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관표 의원 외 7인
17	2015.9.7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용덕, 장옥자
18	2015.11.11	괴산군 6·25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신송규, 장옥자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괴산지역 아동센터 방청(2015.1.23)



▶ 설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2015.2.3)



▶ 완주 농산물 가공공장 견학(2015.4.9)





▶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2015.4.23)



▶ 진미식품 견학(2015.4.6)



▶ 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5.12.4)



▶ 제236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
행정위원회(2015.6.25.)



▶ 제238회 괴산군의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2015.9.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6.26.)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5.5.15.)



▶ 환경보전특별위원회(2015.6.29.)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 (2015.10.16.)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2015.6.30)



▶ 2015년 행정사무감사



▶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개선 성명서 (2015.3.27.)



▶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2015.4.30.)



▶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
(2015.7.3.)



▶ 구례 아이쿱생협 견학 및 엑스포 홍보
(2015.4.9.)



▶ 문경차사발 축제 엑스포 홍보
(2015.5.18)



▶ 이천도자기축제 엑스포 홍보
(2015.5.14)



▶ 곡성장미축제 엑스포 홍보
(2015.5.27)



▶ 문장대온천 개발반대 결기대회
(2015.7.28.)



▶ 제47차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2015.5.7.)



▶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장식
(2015.10.13.)



▶ 중국길림성 집안시 의회방문 (2015.9.18.)



▶ 2015국내의정연수 (2015.11.16.~11.18.)



▶ 연탄배달 자원봉사활동 (2015.11.3.)

군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
군민모두가 행복한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괴산군의회
GOESAN COUNTY COUNCIL

367-80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걱정로 92

[의 장 실] 전화 (043) 833-2280, 830-3570

[부 의 장 실] 전화 (043) 830-3571

[의 원 실] 전화 (043) 830-3591~6

팩스 (043) 833-2281

[의회사무과] 전화 (043) 830-3580 ~ 90

팩스 (043) 833-9986

<http://council.goesan.go.kr>

<http://council.goesan.go.kr>